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64

발의년월일 : 2019. 05. .
발 의 자 : 방 미 숙 의원 (인)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마.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사. 점검요원의 구성 및 관계공무원의 의무 규정 (안 제9조~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복지법」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5. 16 ~ 2019. 5. 27(11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하남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4.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

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5.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시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 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 및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남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시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